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6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이재강 · 장종태 · 김우영
모경종 · 이주희 · 이병진
이광희 · 박용갑 · 박선원
김준형 · 오세희 · 정일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을 정비·보전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시민이 보행용 징검다리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등).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행자용 도하(渡河)시설의 설치

5.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

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② (생략)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④ ~ ⑨ (생략)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보행자용 도하(渡河)시설의 설치</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u>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u>제6호</u>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 ----- ----- ----- -----. ----- ----- <u>제7호</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